

주주총회 참석장

본인은 주식회사 우진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로서 참석합니다.

(주주총회참석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--- 다 음 ---

| 실 질 주 주 참 석 자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성 명 | (인) | 법인:사업자등록번호 개인:생년월일 | |
| 주 소 | | | |
| 보유주식수 | 주 | | |
| 참석 구분 | 주주직접참석 () 대리인 참석 () | 대리참석자 와의 관계 | |
| <p>※ 아래 사항은 대리참석 위임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대리참석자 위임장)</p> <p>본인은 주식회사 우진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로서 대리참석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주주총회 결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전권을 위임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9년 3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주주 (인)</p> | | | |

| 대 리 참 석 자 | | | |
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성 명 | (인) | 법인:사업자등록번호 개인:생년월일 | |
| 주 소 | | | |
| 관 계 | | | |

※ 지참물

- 1) 본 인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- 2) 대리인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 신분증

<췁우진 정관 신·구 대조문>

| 현행 | 개정(案) | 개정사유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2조(목적)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 ~ 10. <현행과 동일></p> <p>11. 전력설비 및 관련시설물 개보수 공사업</p> <p>12. 정보통신공사업</p> <p>13. 기계설비공사업</p> <p><u>14. 전 각항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</u></p> | <p>제2조(목적)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 ~ 10. <현행과 동일></p> <p>11. 전력설비 및 관련시설물 개보수 공사업</p> <p>12. 정보통신공사업</p> <p>13. 기계설비공사업</p> <p><u>14.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</u></p> <p><u>15. 원자력 발전소 제염사업</u></p> <p><u>16. 전 각항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</u></p> | <p>목적사업 추가</p> |
| <p>제8조(주권의 발행과 종류)</p> <p>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.</p> <p>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</p> <p>③ 회사의 주권은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 및 10,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.</p> | <p>제8조(주권의 발행과 종류)</p> <p>① <현행과 동일></p> <p>② <현행과 동일></p> <p>③ 삭제</p> | <p>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경</p> |
| <p><u>신설</u></p> | <p>제8조의2(주식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.</p> | <p>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관련근거 신설</p> |
| <p>제10조(주식매수선택권)</p> <p>① ~ ③ <현행과 동일></p> <p>④ <u>제2항 단서</u>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⑤ ~ ⑪ <현행과 동일></p> <p>⑫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<u>제12조</u>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| <p>제10조(주식매수선택권)</p> <p>① ~ ③ <현행과 동일></p> <p>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⑤ ~ ⑪ <현행과 동일></p> <p>⑫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| <p>자구수정 (오기 수정)</p> |

| | | |
|---|--|---|
| <p>제17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)</p> <p>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<u>제10조 제1항 제1호</u>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| <p>제17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)</p> <p>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<u>제9조 제1항 제1호</u>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| <p>자구수정 (오기 수정)</p> |
| <p><u>신설</u></p> | <p>제17조의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</p> <p>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</p> | <p>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관련근거 신설</p> |
| <p>제39조(이사회 구성과 소집)</p> <p>① <현행과 동일></p> <p>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<u>화일 7 일전에</u>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<u>통지하여</u> 소집한다.</p> <p>③ ~ ⑥ <현행과 동일></p> | <p>제39조(이사회 구성과 소집)</p> <p>① <현행과 동일></p> <p>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<u>회의일 전일까지</u>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<u>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통지하여</u> 소집한다.</p> <p>③ ~ ⑥ <현행과 동일></p> | <p>자구수정 (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 소집 절차 조정)</p> |
| <p><u>신설</u></p> | <p>제55조(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)</p> <p>① <u>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.</u></p> <p>② <u>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.</u></p> | <p>자구수정 (상법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규정 등 반영)</p> |

※ 상기 변경사항 외 개정안의 시행 시점(제39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)에 대한 부칙 추가